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68 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조지연·주호영·박덕흠

신성범 • 박준태 • 엄태영

강대식 · 임이자 · 김은혜

박정하 • 이인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 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,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, 보건,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-현재-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·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

처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13조 등).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"을 "공동활용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"으로 한다.

- ③ 기상청장은 기후·기후변화 감시 정보와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(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)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 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

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"를 "공공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기후・기후변화 감시 및	제13조(기후・기후변화 감시 및
예측 정보의 공동활용) ①・②	예측 정보의 공동활용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기상청장은 기후・기후변화
	감시 정보와 표준시나리오를
	활용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
	(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
	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
	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
	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
	한다)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
	행정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
	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
	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
	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
	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
	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
	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
	한다)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
	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	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<u>공동</u> <u>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</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) ①
기상청장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법」 제10조제2항제5호, 제11조 제2항제3호,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, 제40조제1항,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정부, 지방자치단 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예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조사·연구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
청에 따라야 한다.
<u>⑤</u>
활용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
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
용 등에 필요한 사항
제15조(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
지원을 위한 조사・연구) ① -
<u>공공기관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